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313808(본소), 2019나313815(반소) 판결

[대여금청구 · 매매대금]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313808(본소), 2019나313815(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878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박영익

변론 종결 2020. 7. 8.

판결 선고 2020. 8.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8780(본소),

2018가단8797(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권형관

판사권비용